

서울특별시종로구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서울특별시종로구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6월 18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I. 개정이유

- 「식품위생법」 개정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용자대상에 집단급식소를 포함하여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고, 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변경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II. 주요골자

- 회계관계공무원 변경 (안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)
 - 기금운용관 : 보건소장 → 보건위생과장
 - 기금출납원 : 보건위생과장 → 식품위생담당주사
- 기금 용자대상에 위탁운영 집단급식소의 운영자 추가 (안 제8조)

III. 검토의견

-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관계 법령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부과한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구민의 위생 및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「식품위생법」 제71조 규정에 의거 2000년 7월 설치한 기금으로써,

2007년 5월말 현재까지 총 기금조성액 2,625,700천원을 재원으로 모범음식점 육성 및 시설개선을 위한 용자금 지원 1,651,500천원, 식품위생감시 활동 및 위생수준 향상사업 등에 645,879천원을 집행하고, 용자미수금 83,878천원을 제외한 현재 잔액은 1,895,943천원으로써, 그간 기금운용을 통해 우리 구 위생수준 향상과 구민건강에 일조한 것으로 평가 됩니다.

※ 기금운용 실적 (2001. 7월 ~ 2007. 5월말 현재)

(단위 : 천원)

수 입 : 4,193,322	지 출 : 2,297,379
○ 기금 재원 : 2,625,700	○ 목적사업비 : 645,879
- 징수교부금 2,477,354	- 모범음식점 지원, 위생수준 향상사업
- 이자 수입 140,750	- 소비자식품위생감시 활동 지원
- 기타 잡수입 7,596	- 전통음식 문화 축제 등
○ 융자금 회수 : 1,567,622	○ 융자금 지원 : 1,651,500
잔 액 : 1,895,943	(정기예금 1,600,000 / 현금 295,943)

○ 그러나 연도별 기금규모 대비 운용실적을 보면 기금조성액에 비해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기금집행액이 매우 저조한 수준으로써, 특히 최근 3년간 기금 집행율을 보면 2004년 30.2%, 2005년 16.1%, 2006년 3.7%에 불과하여 자금의 대부분이 정기예금으로 예치되고 있는 실정이므로, 융자지원 확대는 물론 목적사업을 위한 사업개발 등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.

※ 연도별 기금운용 현황 (2007. 5월말 현재)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01~03년	2004년	2005년	2006년	2007. 5월말
수 입 (A)	2,822,747	2,107,517	1,725,822	1,844,115	1,956,268
· 징수교부금	2,171,102	111,646	100,142	51,840	42,624
· 이자수입	24,962	16,639	12,973	42,706	43,470
· 융자금회수	626,683	411,534	138,163	296,634	94,608
· 잡 수 입	-	-	2,691	4,905	-
· 전년도이월	-	1,567,698	1,471,853	1,448,030	1,775,566
지 출 (B)	1,255,049	635,664	277,792	68,549	60,325
· 융자지원	1,123,000	438,500	40,000	-	50,000
· 목적사업비	132,049	197,164	237,792	68,549	10,325
잔 액(A-B)	1,567,698	1,471,853	1,448,030	1,775,566	1,895,943

○ 조항별 검토사항

- 안 제5조에서 기금운용관을 보건소장에서 보건위생과장으로, 기금출납원을 과장에서 담당주사로 하향 조정하고, 안 제5조의2에서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서울특별시종로구재무회계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관련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.
- 안 제8조에서 기금의 용자대상을 현행 종로구 관할지역안의 “영업자”에 한정하던 것을 “위탁에 따라 운영되는 집단급식소 운영자”에 대해서도 용자가 가능하도록 용자대상을 확대하였는데, 최근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서의 식중독 사고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이 중 직영보다 위탁에서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“위탁운영되는 집단급식소에서 사용하는 급식시설의 개·보수”에도 기금을 용자를 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이 개정(제71조제3항제7호 신설)됨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이견 없으며,
- 이와는 별도로 현재 노후시설 및 화장실개선, 모범음식점 육성 등에 지원하는 용자대상 범위를 기금목적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더욱 확대해 나가는 한편, 담보물건 확보가 어려운 영세업자에 대한 용자절차 개선 등 누적된 기금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.

IV.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

○ 식품위생법 (개정 2006. 12. 28, 법률 제8113호)

第71條 (食品振興基金) ①食品衛生 및 國民營養의 수준의 향상을 위한 事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財源에 充당하기 위하여 市·道 및 市·郡·區에 食品振興基金(이하 “基金”이라 한다)을 設置한다.

②基金은 다음의 財源으로 造成한다.

1. 食品衛生團體의 出捐金
2. 제65조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7조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한 課徵金
3. 基金의 運用으로 생기는 收益金
4.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收入金

③基金은 다음의 事業에 사용한다.

1. 영업자(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의한 영업자를 포함한다)의 위생관리 시설개선을 위한 融資事業
2. 食品衛生에 관한 敎育·홍보사업(소비자단체의 敎育·홍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)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敎育·활동지원
3. 食品衛生 및 國民營養에 관한 調查·研究事業
4.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의 지원
5. 食品衛生敎育·研究機關의 육성 및 지원
6. 飲食文化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
7. 집단급식소(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에 한한다)의 급식시설 개·보수 <신설 2006.12.28>
8. 그 밖에 식품위생, 국민영양,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事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

○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8조 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.

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○ 서울특별시종로구재무회계규칙

제3조(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) ①지방재정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. 단, 해당기금에 있어서는 설치조례에 관직지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.

1. 본 청

기금운용관 - 기금별 담당관(과)장

기금출납원 - 기금별 담당관(과) 주무담당 및 업무담당